

11.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

건설교통부고시제1999-277호 1999. 9. 14.

- 제8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마. 공동주택의 상가, 노인정, 관리사무소등의 부대 및 복리시설과 지하주차장등의 공용공간에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하주차장에는 고효율조명기기중 고효율반사갓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(전동기)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“내선규정”의 콘덴서 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방설비용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건축부문중 ①

외피의 열관류율에서 외벽 및 바닥 3점란의 “0.90~0.10”을 “0.90~1.0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(사업계획승인)을 받았거나 건축허가(사업계획승인) 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개정 기준에 의할 수 있다.

주택회보